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시, 문화재 교육 실적을 지정요건이 아닌 심사·선정 단계에서 가점 등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, 실적이 없는 신규 기관 또는 단체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도록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따라,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제출할 때, 문화재교육 실적 관련 서류를 필수사항이 아닌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
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실적”을 “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4항 중 “가지정문화재”를 “임시지정문화재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의2서식 제2호 중 “실적”을 “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) ① 법 제22조의4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7조(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최근 3년간의 문화재교육 실시 실적	2. ----- -- 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3. 4. (생략)	3.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6조(국가지정문화재 대장) ① ~ ③ (생략)	제26조(국가지정문화재 대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32조에 따른 <u>가지정문화재</u> 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	④ ----- <u>임시지정문화재</u> ----- -----.